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농림부 공고 제 2003-47호]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15일

농림부장관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1. 의결 주문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축산물가공업중 식육을 단순히 절단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식육단순절단포장처리업으로 분리하여 신설하며, 소·말·돼지·양을 제외한 가축을 가축 소유자의 소재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장소에서의 도축은 농민과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하고, 축산물위생감시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신설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가. 부상·난산·산육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도살·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을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로 한정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나. 소·말·돼지·양을 제외한 가축을 가축소유자의 소재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한 도축을 허용함(안제7조제1항제3호 개정)

다. 식용란에 대해 위생검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5항)

라.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과 대장균등 병원성미생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유해잔류물질 기준 위반 출하농가에 대해 3월의 범위안에서의 출하제한, 특별관리농가 지정 등 출하가축위생상태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12조의2)

마. 축산물의 위생 지도등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위생감시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두도록 함(안20조의2, 안20조의3)

바. 축산물가공업에서 식육단순절단포장처리업을 분리하여 업종을 신설함(안제21조제1항)

